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06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박상웅 · 김성원 · 김재섭
김미애 · 윤한홍 · 조은희
주진우 · 서일준 · 강승규
김형동 · 김상훈 · 송석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

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u>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u> ----- ----- ----- ----- -----.
<u><신 설></u>	1.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u>
<u><신 설></u>	2.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u>
<u><신 설></u>	3.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